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자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4건 검 토 보 고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체계 마련 등〉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22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90호)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14호)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0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개관	11
2. 제정안의 입법필요성	11
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정책 현황	11
나. 관련 사례 분석	15
다. 종합적 검토	20
3. 조문별 검토	28
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	28
나. 위원회 설치	31
다. 기본계획 수립	34

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구 지정	44
마.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46
바. 고용지원	50
사.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등	54
아. 유효기간	58

※ 참고자료 60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충남 4개 시·군 설문조사	60
2. 유럽 주요국 탈석탄 계획	61
3. 독일 탈석탄위원회 보고서 요약	63
4. 영국의 탈석탄 관련 지원 프로그램	64

I. 제안경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22)】

1. 발 의 자 : 이재관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6.
3. 회부연월일 : 2024. 11. 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90)】

1. 발 의 자 : 김소희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8.
3. 회부연월일 : 2024. 11. 1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14)】

1. 발 의 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1.
3. 회부연월일 : 2024. 11. 1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809)】

1.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2.

3. 회부연월일 :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22)】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보상, 노동자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 지역에 대한 지원함으로써 석탄발전소를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

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지역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기한 연장·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90)】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로 부족함.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

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특례, 규제자유특구 특례, 조세감면, 산업기반 조성 지원, 청년근로자 지원, 인력 양성, 친환경에너지 사용, 산업단지 입주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14)】

제안이유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이후 탈석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중임.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일정,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법률, 로드맵 등이 부재하여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정부는 2021년 「석탄발전폐지·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발

전사업자 권리,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석탄발전소 폐지를 1년 앞둔 현재시점까지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음.

특히 2020년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지 시 7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 예상되며 이는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광범위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발전소 및 협력업체 근로자, 상권근로자 부문에서 약 2만 5천명의 취업유발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안 제6조).

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809)】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이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으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대책과 근로자의 실업이나 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임.

특히 2021년 「석탄발전폐지·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발전사업자 권리,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와 지역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와 지역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지역활성화 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 주민, 노사 당사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아.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차.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각 제정안은 에너지전환 정책 과정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해당 화력발전소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 등이 경제적 기반을 잃고 지역 경제가 침체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 현황

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음.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¹⁾를 통해 2050년까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지난 '21년 10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음.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23년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발전량 기준 전체 발전원 중 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에 34%(196TWh)로 정부는 '30년까지 그 비중을 19.7%(122.5TWh)로 축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노후 석탄발전소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임.

[표]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 TWh, %)

		원전	석탄	LNG	신재생	무탄소	기타	합계
제9차 전기본	발전량	146.4	175.1	136.6	121.7	-	6.0	585.8
	비중	25.0	29.9	23.3	20.8	-	1.0	100
NDC 상향안	발전량	146.4	133.2	119.5	185.2	22.1	6.0	612.4
	비중	23.9	21.8	19.5	30.2	3.6	1.0	100
제10차 전기본	발전량	201.7	122.5	142.2	134.1	13.0	8.1	621.8
	비중	32.4	19.7	22.9	21.6	2.1	1.3	100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4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0기로 그중에 10기가 30년 이상 가동 중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인 29기가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²⁾하고

2)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노후화력발전소 폐지 일정상 예정 연도는 발전공기업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발전사업허가 시 30년 가동 후 폐지가 의무적으로 반영된 사항은 아님.

일부는 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임.

[표] 화력발전소 현황 및 폐지 일정 (제10차 전기본 기준)

연번	지역	발전소명*	용량 (MW)	연번	지역	발전소명	용량 (MW)
1	전남	여수#1	340	31	충남 29기	보령#3	550
2	2기	여수#2	329	32		보령#4	500
3	강원 8기	북평#1	595	33		보령#5('26)	500
4		북평#2	595	34		보령#6('26)	500
5		삼척그린파워#1	1,024	35		보령#7	500
6		삼척그린파워#2	1,024	36		보령#8	500
7		동해#1('29)	200	37		신보령#1	1,019
8		동해#2('29)	200	38		신보령#2	1,019
9		강릉안인#1	1,040	39		당진#1('29)	500
10		강릉안인#2	1,040	40		당진#2('29)	500
11	경남 14기	고성#1	1,040	41		당진#3('30)	500
12		고성#2	1,040	42		당진#4('30)	500
13		삼천포#3('26)	560	43		당진#5('36)	500
14		삼천포#4('26)	560	44		당진#6('36)	500
15		삼천포#5('27)	500	45		당진#7	500
16		삼천포#6('28)	500	46		당진#8	500
17		하동#1('26)	500	47		당진#9	1,020
18		하동#2('27)	500	48		당진#10	1,020
19		하동#3('27)	500	49		신서천#1	1,018
20		하동#4('28)	500	50		태안#1('25)	500
21		하동#5('31)	500	51		태안#2('25)	500
22		하동#6('31)	500	52		태안#3('28)	500
23		하동#7	500	53		태안#4('29)	500
24		하동#8	500	54		태안#5('32)	500
25	인천 6기	영흥#1('34)	800	55		태안#6('32)	500
26		영흥#2('34)	800	56		태안#7	500
27		영흥#3	870	57		태안#8	500
28		영흥#4	870	58		태안#9	1,050
29		영흥#5	870	59		태안#10	1,050
30		영흥#6	870				

* 음영 표시한 발전소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괄호 안의 연도는 폐지 예정 연도임.

자료 :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나, 석탄화력발전과 관련된 산업체 및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발전설비 운전, 연료 수송, 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감소³⁾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에 거주하면서 판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을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 효과⁴⁾는 커질 것으로 보임.

특히,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시·군(태안, 당진, 보령, 서천) 지역주민과 근로자는 대체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을 지역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응답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발전소 폐지 이전에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⁵⁾.

3)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인력 중 5개 발전공기업의 근로자는 지금도 순환근무 등을 통해서 다른 분야로 직무전환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고용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발전공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는 일자리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

4)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년에 실시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전국의 취업유발감소 인원은 주변 상권 근로자 및 발전소 연관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약 2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5) 충청남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는 [참고자료 1] 참조

나. 관련 사례 분석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이미 탈석탄 정책을 시행 중이며,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탈석탄 정책을 시행⁶⁾하면서, 화석에너지산업 축소의 부정적인 사회적·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동 제정안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인 독일과 영국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를 거버넌스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인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먼저, 독일은 발전용 석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⁷⁾와 달리 자국내 광산에서 채굴한 석탄을 이용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석탄을 생산하는 광산 인근 지역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큰 상황임.

6) 유럽 주요국의 탈석탄 계획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7) 우리나라 탄광에서 나오는 석탄은 대부분 무연탄으로 연탄을 제조하기에는 적합하나, 발전용 연료로는 부적합하여 대부분의 발전용 석탄은 외국에서 수입 중임.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2018년 6월에 탄광지역 대표 및 에너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⁸⁾한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Kommission für Wachstum, Strukturwandel und Beschäftigung, 이하 “탈석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원들이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최종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한 후에 그 내용⁹⁾을 입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탈석탄법(Kohleausstiegsgesetz)」, 「석탄지역 구조강화법(Strukturstärkungsgesetz)」 3개의 법률이 제정되었음.

법률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연방기후보호법」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한 중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② 「탈석탄법」은 탈석탄 목표와 함께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단계적인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③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탈석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① 조기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¹⁰⁾, ②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천연가스 또는 재생에

8) 구체적인 위원회 인원은 연방의회 3명, 연방정부 1명, 탄광지역 대표 7명, 산업계 5명, 에너지 산업계 대표 4명, 환경단체 3명, 노동조합 대표 3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었음.

9) 독일 탈석탄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참고자료 3] 참조

10) 무연탄화력발전소는 2027년까지 경매를 통해 폐지하고 이후에는 강제로 폐지하되 빨리 폐지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는 구조이고, 갈탄화력발전소는 연방정부와 발전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

너지원 사용 열병합발전소로의 전환 보너스 지급, ③ 석탄산업 및 화력발전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금 지급¹¹⁾, ④ 인프라 건설, 기업·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한 탄광지역 재정지원 기금 조성¹²⁾ 등임.

(2) 반면, 영국은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기반으로 18세기 유럽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었지만, 탈석탄 정책과 별개로 이미 석탄 채굴이 경제성 저하 등을 이유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가 탄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영국이 2013년에 도입한 전력시장개혁(Electricity Market Reform, EMR)은 영국의 석탄발전 감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EMR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① 차액정산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CfD)을 기반으로 하는 고정가격매입제도¹³⁾, ② 용량시장제도(Capacity Market, CM)¹⁴⁾, ③ 탄소포집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신규 화석연료발전소 탄소배출량 제한(Emission Performance Standard, EPS)¹⁵⁾, ④ 탄소가격의 하한을 정하는 탄소가격하한 제도(Carbon Price F

한 폐지를 진행 중임.

11) 고용전환 지원금은 2038년까지 예정된 탈석탄 정책의 일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최대 40,00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됨.

12) 「석탄지역 투자법(Investitionsgesetz Kohleregionen, InvKG)」 및 여러 교통노선법(Verkehrswegegesetze)를 제·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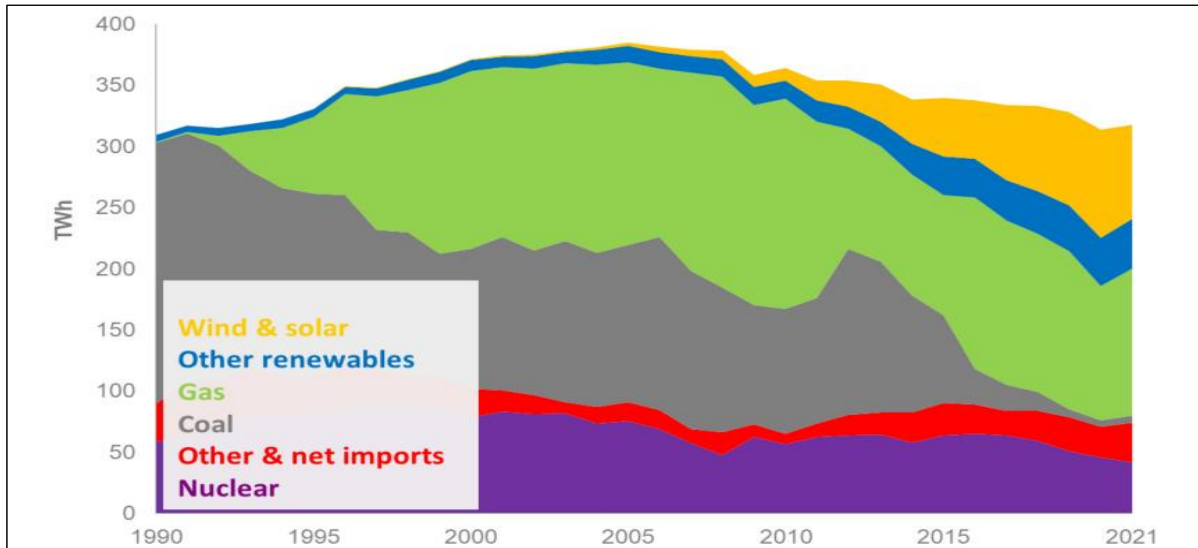
13)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원 투자자는 당초 계약한 가격에 비해 전력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력가격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계약가격(strike price)으로 정산받는 것이 보장됨.

14) 신규설비투자를 유인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비예비력 확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나, 기존 화력발전소가 용량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져 탈석탄 정책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15) 설비용량 50MW 이상의 신규 화석연료발전소에 대한 EPS의 제한 기준은 450kg/MWh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탄소포집시설(CCS)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신

loor, CPF)¹⁶⁾로 구분됨.

[그림] 영국 전원별 발전량 추이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처럼 영국에서는 시장경제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반영된 제도를 통해 석탄발전소 감축이 이루어졌으므로, 독일과 같이 정부가 입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으며 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로 진행¹⁷⁾되었음.

(3) 탈석탄에 적극적인 독일과 영국 두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장친화적인 제도들을 활용하면서 전력시장을 개혁한 영국의 사례보다는 입법을 통해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구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음.

16) 기존 탄소배출권 가격에 일정 수준의 탄소가격부담금(Carbon Price Support, CPS)을 추가하여 탄소가격의 하한을 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발전소는 입찰 경쟁력이 약화되어 영국 발전시장에서 서서히 퇴출되었음.

17) 영국이 시행한 탈석탄 관련 개별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4] 참조

현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독일은 입법과정에 앞서 탈석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탈석탄 정책 및 정의로운 전환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해 보임.

다만, 입법을 통하여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영국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차액정산계약, 탄소가격부담금 등)를 활용하여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한 것처럼 이와 유사하게 입법을 통한 탈석탄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대 석탄산업의 쇠퇴로 인한 폐광 지역 경제 쇠퇴 및 지역기업 경영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을 1995년 12월에 제정하였는데, 이는 동 제정안과 일부 유사성이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폐특법을 통해 진행한 주요 사업은 6개로, ①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②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③ 탄광지역개발사업, ④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⑤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 ⑥ 투자법인 설립이며, 최근까지도 진행 중인 사업은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¹⁸⁾와 폐광지역개발기금¹⁹⁾ 조성임.

폐특법이 제정된 후 27년간 폐광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체산업 육성 등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평가²⁰⁾를 받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폐광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려 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할 때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적 검토

해외 사례들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탈석탄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기반을 잃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

18)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폐광지역 내 기업에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19) 강원랜드 당기순이익의 25%를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기금

20)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르면 폐광기금 중 대체산업 육성사업 비중은 전체의 25.8%에 불과하는 등 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한 가시적인 폐광지역진흥 성과 창출에 있어 다소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원방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먼저,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7장 ‘정의로운 전환²¹⁾’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지역이나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제47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제48조), 녹색산업 업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제49조), 공정한 이익 공유를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제52조) 및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제53조)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10장에서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경제적 영향을 받는 지역에도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폐지는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정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서해안 지역 등의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역 상권 침체 등의 문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신산업 육성, 재취업 촉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특별지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후대응 기금의 용도도 정의로운 전환 외에 다른 사업이 많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충분한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우려가 있음.

[표] 탄소중립기본법 정의로운 전환 관련 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

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 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라 한다)에서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²²⁾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으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가동 중지로 지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큰 충남 서해안 인근 지역 등도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을 통한 지원은 재난 등으로 인한 생산시설 피해, 특정 업종의 불황, 생산기지의 이전 등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

2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큰 지역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²³⁾인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산업위기대응법과 취지와 목적이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로, 독일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응되는 연방기후보호법과 별개로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지역 경제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²⁴⁾하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보는 지역이나 부담을 지게 되는 산업체 등에 대하여 탄소중립 기본법 또는 지역위기산업대응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국내·외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일정 수준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23) 참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경우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가 지정되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울산 동구, 거제, 군산, 목포 등이 지정되었음.

24) 다만, 독일의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미 1980~1990년대에 석탄 광산을 폐광하고 폐특법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와는 상황에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경제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① 특별법안에 규정된 고용보조금 지급이나 부담금 감면과 같이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② 발전사업자가 미리 지자체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소 폐지, 설비·부지 재활용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영향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립²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5)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정부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방향성이 구속력이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발전사업자들의 장기적인 폐지 계획과 부지·시설 활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폐지지역 지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함.

3. 조문별 검토

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

각 제정안은 특별법으로 직접 지원을 받는 대상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하 “폐지지역”)’을 각기 다르게 규정함(안 제2조).

[표] 정의

이재관의원안	김소회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2. “석탄화력발 전소 폐지지역” 이란 「전기사 업법」 제25조 에 따른 전력수 급 기본 계획에 따라 폐지 계획 이 반영된 설비 가 위치한 시· 군·구를 말한 다.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2. “석탄화력발 전소 폐지지역” 이란 석탄화력 발전소가 설치 되어 있거나 있 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 로서 해당 발전 소가 폐지됨에 따라 경제적 피 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기 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 는 지역을 말한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3. “석탄화력발 전소 폐지지역” 이란 석탄화력 발전소가 설치 되어 있거나 있 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 로서 해당 발전 소가 폐지됨에 따라 경제적 피 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기 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 는 지역을 말한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2. “석탄화력발 전소 폐지지역” 이란 「전기사 업법」 제25조 에 따른 전력수 급 기본 계획에 따라 폐지 계획 이 반영된 설비 가 위치한 시· 군·구와 석탄 화력발전소 폐 지에 따라 경제 적 피해가 예상 되는 인접 지역 으로서 기후에

이재관의원안	김소회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다.	다.	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각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폐지지역의 정의는 ①다른 법률의 조문 인용 여부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 여부, ③인접 지역의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음.

[표] 제정안별 폐지지역의 정의 비교

	이재관의원안	김소회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정의규정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 계획이 반영된 설비가 위치한 시·군·구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있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있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 계획이 반영된 설비가 위치한 시·군·구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 지역
인용 조문	「전기사업법」 제25조	없음	없음	「전기사업법」 제25조
지정 여부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인접 지역 포함 여부	불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폐지지역의 구체적인 정의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의 추정 규모, 인접 지역 인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일반국민이 특별법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을 예측할 수 있으려면 다른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등 폐지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별도 지정 없이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폐지지역에 바로 해당하도록 규정하면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폐지지역을 지원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박해철의원안과 같이 폐지지역 범위는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지도록 규정하되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접 지역을 폐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지원 대상의 명확성 확보와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모두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지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초 지자체로 명시하여 별도 지정 없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위원회 설치

이재관의원안은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간사위원을 맡도록 규정함(안 제5조).

[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재관의원안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이하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역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재관의원안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갈등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당연직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당연직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당연직위원은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별도 과정 없이 자동으로 위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당연직위원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된 부처는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등 대강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항상 포함되어야 할 당연직위원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인 위원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도록 그 밖

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²⁶⁾에 따라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별도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보다는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 등을 심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위원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기본계획 수립

각 제정안은 정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이재관의원안 제6조 및 제7조, 김소희·임이자·박해철의원안 제5조).

[표] 기본계획 수립

이재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	제5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

이재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② 종합지원계획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지원계획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지원계획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

이재관의원안	김소회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의를 거쳐 수립하되, 폐지지역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종합지원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지지역의 인구·환경·산업 등 경제적 피해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③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지지역의 인구·환경·산업 등 경제적 피해 규모 산정과 대책에 관한

이재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2. 폐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역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 4. 폐지지역의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5. 폐지지역의 국토 및 해양의 이용·개발·보전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폐지지역의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폐지지역의 도로·항만·공항·수도 등 사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 및 산업에 대한 피해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근로자 현황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 조사 3. 제6조에 따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에 따른 피해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취업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 생활 향상에 관한 사항 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과 제7조에 따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항 2. 폐지 석탄발전소의 대체 에너지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폐지지역의 고용·취업 현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폐지지역의 국토 및 해양의 이용·개발·보전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폐지지역의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폐지지역의 도로·항만·공항·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

이재관의원안	김소회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회간접자본시설 의 확충·정비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폐지 지역의 경제 진 흥·환경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 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 련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 청받은 관계 행 정기관 등은 특 별한 사정이 없 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기 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폐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중 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 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이재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7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	④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에 따른 종합적인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향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의 항목 내용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 지원 계획에

이재관의원안	김소회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너지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립·확정된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되,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제정안은 폐지지역등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²⁷⁾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관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음.

[표] 제정안별 기본계획 비교

	이재관의원안	김소회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수립 주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립 주기	◦ 3년	◦ 규정없음(5년)	◦ 5년	◦ 3년
탄소 중립 기본법 과의 관계	◦ 규정없음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됨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절차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절차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같음 가능
시행 계획 수립 여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	◦ 규정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중장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기침체는 지역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발전소 폐지 계획에 부합하는 중장기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7)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상호 충돌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각 제정안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①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②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거나 ③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으로 같음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다만, 수립 주기의 경우 폐지지역등의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이므로 해당 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수립주기를 어느 정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안이고 폐지지역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²⁸⁾에 포함된 사안이므로 특별법을 통해 행정계획을 새로 수

28)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1.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구 지정

이재관의원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구(이하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의 특구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표] 특구 지정

이재관의원안
제10조(특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역의 산업·경제에 낙후 또는 쇠퇴가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사회·경제지표의 현저한 감소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 3. 지역의 지방재정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폐지지역의 주민·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협의 및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재관의원안

- 제11조(특구 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특구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한 특구 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겪는 지역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하므로 폐지지역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재관의원안은 폐지지역에 특화된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특구 제도를 특별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동 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특구발전계획 이외에는 특구에 관한 지원 방안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와는 다른 별도의 특구를 특별법으로 도입할 실익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김소희·임이자·박해철의원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사업 또는 지역활성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김소희의원안 제17조, 임이자의원안 제18조, 박해철의원안 제14조).

[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김소희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박해철의원안
제1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진흥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진흥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지역활성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²⁹⁾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 기지·군 공항 이전지역, 점경지역과 같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경제 상황에 변동이 있는 지역을 특별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차등보조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일부 입법례가 있음.

국가보조금 차등보조율 특례 관련 입법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

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①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지역에 대한 여러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국가가 차등보조율을 인상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바. 고용 지원

이재관·김소희·임이자의원안은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지역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대체산업사업자에게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재관의원안 제17조, 김소희의원안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임이자의원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추가로, 이재관의원안은 폐지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우선 지급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 시행을 규정함(이재관의원안 제13조 및 제14조).

[표] 고용 지원

이재관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임이자의원안
제13조(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이재판의원안	김소회의원안	임이자의원안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안정지원 등) ① 국가는 폐지지역에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		

이재판의원안	김소회의의원안	임이자의의원안
개발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①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또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폐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 고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업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대체 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시·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11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 산업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대체 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시·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12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 산업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직접 받는 대상이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을 안정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재관·김소희·임이자의원안과 같이 우선 고용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이재관의원안과 같이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게 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모두 유인하여 폐지지역에 새로운 경제구조가 자리를 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재관의원안은 폐지지역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해당 사업의 우선 시행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다른 지역 및 산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우선 시행 여부, 요건, 절차 등은 개별법령이 아닌 「고용보험법」 관련 법령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사.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등

김소희의원안은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①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② 대체산업 기업 및 청년근로자 지원, ③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⑤ 학교 설립 지원, ⑥ 친환경에너지 사용 권고, ⑦ 산업단지 입주 특례 등 여러 지원 방안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표]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등

김소희 의원안
제21조(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2조(대체산업의 기업 및 청년근로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 관련 기업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으로 해당 산업의 신설·증설과 이전, 창업 등을 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소재하거나 소재할 예정인 대체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세대 근로자에게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 정

김소희 의원안

하여 해당 주택의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국가는 대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산업 관련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체산업 관련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체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대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학교의 설립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학교 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인가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김소희 의원안

한다.

제26조(친환경에너지 사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산업사업자가 전력 사용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친환경 전력(이하 “친환경에너지”라 한다)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대체산업사업자의 친환경에너지 사용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체산업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등에 대하여 친환경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친환경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체산업사업자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 절차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지지역 경기가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확보를 통해 기업, 근로자, 주민이 지역에 정착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를 정책적으로 폐지하는 이유가 에너지전환인 만큼 향후 폐지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공장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가급적 탄소를 적게 배출하도록 정책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음.

다만, 김소희의원안 제2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친환경 전력의 이용을 대체산업사업자나 공장·사업자 등에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무탄소 친환경 전력에 포함되는 에너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별도로 정의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어 법체계상 산업단지 입주 관련 사항들을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우선 입주 지원 특례의 근거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 유효기간

이재관의원안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부칙 제2조)

[표] 유효기간

이재관의원안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4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주로 발전소 폐열 관리를 위해 용수 공급이 용이하고 수입하는 발전용 석탄을 하역할 수 있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특별법을 통한 지원혜택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삼척그린파워 및 강릉안인화력 발전소 이후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허가는 사실상 중단되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지원이 영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은 크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부칙으로 정하여 폐지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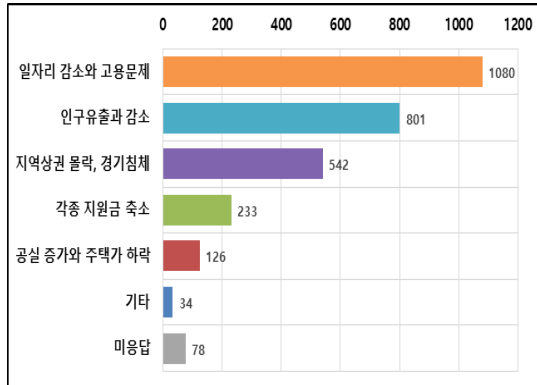
특별법으로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취지가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장기적으로는 대체산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구조가 지역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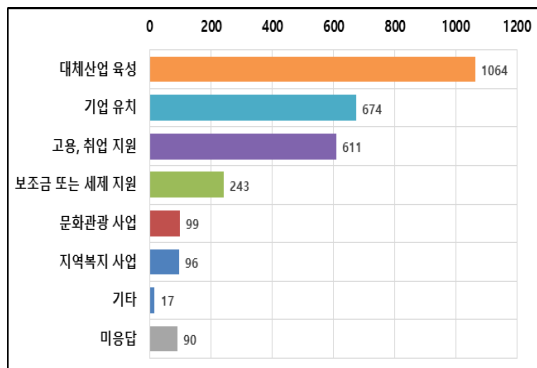
[참고자료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충남 4개 시·군* 설문조사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될 때 나타날 가장 큰 문제점 (2개 선택)



응답	응답수	
	합계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	1,080	37.3%
인구 유출과 감소	801	27.7%
지역상권 몰락 등 경기침체	542	18.7%
각종 지원금 축소	233	8.1%
공실증가와 주택가 하락	126	4.4%
기타	34	1.2%
미응답	78	2.7%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필요한 지원(2개 선택)



응답	응답수	
	합계	
대체산업 육성	1,064	36.8%
기업 유치	674	23.3%
고용, 취업 지원	611	21.1%
보조금 또는 세제 지원	243	8.4%
문화관광 사업	99	3.4%
지역복지 사업	96	3.3%
기타	17	0.6%
미응답	90	3.1%

* 태안, 당진, 보령, 서천
자료: 충청남도

[참고자료 2] 유럽 주요국 탈석탄 계획

국가	연도	내용
그리스	2019년	2028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21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5년까지 탈석탄
	2022년	탈석탄 계획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변경
네덜란드	2017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19년 이에 대한 법제화
덴마크	2017년	PPCA(Powering Past Coal Alliance) 가입,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2021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8년까지 탈석탄
독일	2019년	독일탈석탄위원회 2038년까지 탈석탄 계획 권고, 2020년 이에 대한 법제화
	2021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루마니아	2021년	2032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22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30년까지 탈석탄
몬테네그로	2021년	2035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벨기에	2016년	유럽 내 최초로 석탄을 사용한 국가에서 탈석탄 국가로 전환
북마케도니아	2021년	2027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불가리아	2021년	2038-4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스웨덴	2017년	2022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20년	유럽 내 세 번째 탈석탄 국가로 전환
스페인	2021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슬로바키아	2019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슬로베니아	2022년	2033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아일랜드	2018년	PPCA 가입, 2025년까지 탈석탄 계획
영국	2015년	2025년까지 탈석탄 최초 선언
	2020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4년까지 탈석탄 계획
오스트리아	2016년	2023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19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0년까지 탈석탄 계획
	2020년	유럽 내 두 번째 탈석탄 국가로 전환
	2022년	2020년 탈석탄 국가로 전환되었으나, 2022년 6월 석탄 1기 예비전력으로 배치, 2023년까지 탈석탄 계획
이탈리아	2017년	2025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체코	2022년	2033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크로아티아	2021년	2033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포르투갈	2017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19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3년까지 탈석탄 계획
	2020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1년까지 탈석탄 계획
	2021년	유럽 내 네 번째 탈석탄 국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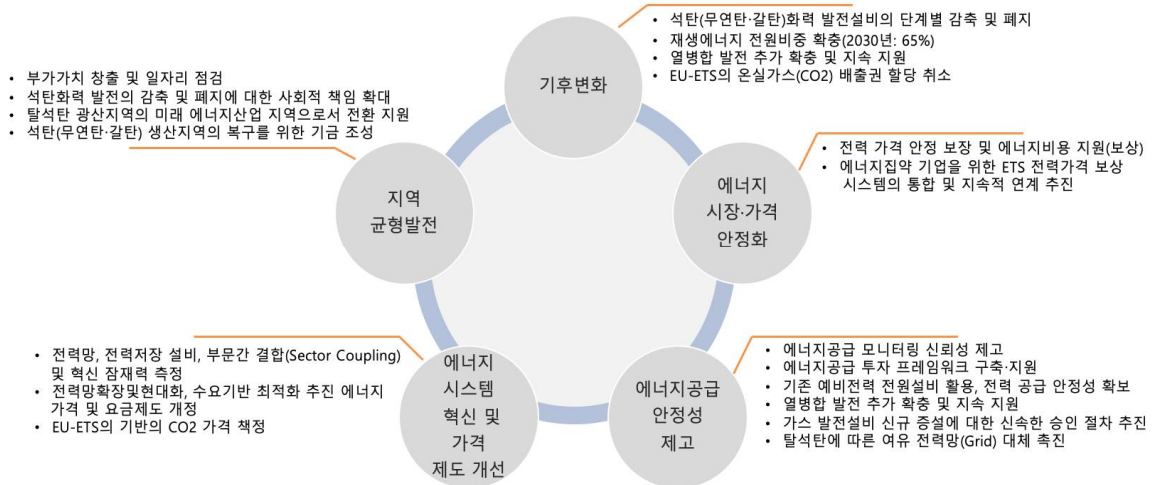
폴란드	2021년	COP26에서 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 서명
프랑스	2016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17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2년까지 탈석탄 계획, 2019년 이에 대한 에너지 및 기후법 제정
	2022년	탈석탄 계획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
핀란드	2016년	2030년까지 에너지생산을 위한 석탄 사용 금지 발표, 2019년 이에 대한 법제화
헝가리	2019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21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5년까지 탈석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참고자료 3] 독일 탈석탄위원회 보고서 요약

○ 독일은 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2018년 6월에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Kommission für Wachstum, Strukturwandel und Beschäftigung, 이하 ‘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19년 1월, 탈석탄위원회는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함.

○ 탈석탄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참고자료 4] 영국의 탈석탄 관련 지원 프로그램

대상	분야	정책
소비자 /가정	보상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선택한 녹색 요금을 보상한 후 면제 진행
	구조조정 지원	가정 및 상업용 건물 태양 전지판 설치 보조금 지급
	적응 지원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자문 제공
노동자	보상	6~12개월 임금 수준의 퇴직 일시금 지급 - 주 정부 실업 수당 및 장애수당 제공 - 기타 복지 혜택 제공
	구조조정 지원	퇴직 후 6~12개월 동안 채용 및 직업훈련 자문 제공
	적응 지원	석탄산업 사회복지 단체(Coal Industry Social Welfare Organization)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기업	보상	- 영국 재무부 재정적 손실 흡수 - EU 법규에 따라 민간 석탄 생산업체에 보조금 제공 - 영국 재무부가 광부의 건강 보상 및 환경 관련 책임 흡수
	구조조정 지원	시장경제로 인한 기업 다각화(석탄발전소→가스, 광산 회사→부동산 개발회사) 모색
	적응 지원	세금 및 규제 완화
지역사회	보상	수익지원보조금제도(Revenue Support Grant System) 마련하여 광산 및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방 정부의 재산세 세입 손실 보상
	구조조정 지원	- 정부가 지원하는 탄광부지 매립 프로그램 마련 - EU 구조 기금(Structural Funds) 지원 - 영국 지역정책 일환으로 석탄 채굴지역에 대한 실업 대책지원지역(Assisted Area) 지위 획득 - 폐광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적응 지원	- 석탄지역(Coalfields)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 재생신탁(Regeneration Trust) 마련 - 유산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복권 기금 마련 - 국립광산박물관 기금 제공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